혼인의취소·이혼등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0. 1. 2013르158(본소), 2013르165(반소)]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홍광식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드합328(본소), 2013드합59(반소) 판결 【변론종결】2014. 8. 27.

【주문】

]

- 1. 제1심 판결 중 본소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1. 1. 3. 창원시 의창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8.부터 2013.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 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가. 및 다.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5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가. 원고 본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청구하다. 나. 피고 1) 본소 :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원고 청구인용(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가. 및 다.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5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가. 원고 본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청구하다. 나. 피고 1) 본소 :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원고 청구인용(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가. 및 다.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5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가. 원고 본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청구하다. 나. 피고 1) 본소 :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원고 청구인용(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가. 및 다.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한다)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5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본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청구하다. 나. 피고 1) 본소 :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원고 청구인용(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가. 및 다.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5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가. 원고 본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청구하다. 나. 피고 1) 본소 :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원고 청구인용(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가. 및 다.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5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가. 원고 본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청구하다. 나. 피고 1) 본소 :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원고 청구인용(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가. 및 다.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5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가. 원고 본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청구하다. 나. 피고 1) 본소 :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원고 청구인용(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가. 및 다.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5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가. 원고 본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청구하다. 나. 피고 1) 본소 :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원고 청구인용(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가. 및 다.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한다)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5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가. 원고 본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청구하다. 나. 피고 1) 본소 :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원고 청구인용(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가. 및 다.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5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가. 원고 본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청구하다. 나. 피고 1) 본소 :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원고 청구인용(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가. 및 다.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한다)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5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본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청구하다. 나. 피고 1) 본소 :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원고 청구인용(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가. 및 다.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8,180,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5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가. 원고 본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청구하다. 나. 피고 1) 본소 : 제1심 판결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원고 청구인용(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10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1. 인정사실

가. 혼인신고 및 자녀

원고와 피고는 2011. 1.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

- 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 1)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와 재활의학과 의사인 피고는 2010. 9.경 중매로 만나 2010. 12. 26. 결혼식을 올리고, 2011. 1.3. 창원시 의창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 원·피고는 결혼 후 원고의 모친인 소외 1이 마련해 준 전세보증금으로 창원시 성산구 (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전세를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2) 피고는 신혼 생활 중이었음에도 원고와의 성관계를 극히 꺼려 왔고, 한 달에 2~3회 정도 이루어지는 성생활도 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성기 대 성기의 결합이 아니라 성행위에 유사하거나 갈음하는 행위(예를 들어 원고의 성기를 피고의 입으로 핥거나 손가락으로 자극하는 식의 행위 등)로 대신하였는데, 2011. 4.경부터는 덥다는 이유 등으로 아예 거실에서 따로 자거나, 매트리스를 구입해 와서 원고와 떨어져 자는 적이 많아서 이 때문에 부부 사이의 불화가 시작되었다.
- 3) 원고는 혼인 직후부터 아이를 가지기를 원하였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자, 피고가 2011. 9. 24. 부산 ○○병원에서 불 임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피고가 무정자증에다 성염색체에 선천적 이상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 4) 이에 피고는 검사 결과가 정확한지를 재확인하고 불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 10. 8. 서울△△병원에서 염색체검사를, 2011. 10. 15. □□□□병원에서 염색체검사를, 2011. 12. 14. □□□□병원에서 고환조직검사를 받았다.
- 5) 위 각 재검사 결과, 피고는 정상적인 남성이 가지는 46XY의 염색체가 아닌 45X 세포와 46XY의 염색체가 섞여있는 '모자이시즘(Mosaicism)'이라는 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 성선기능이 저하되어 불임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 6) 원고는 위 재검사 결과를 한참 후에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아이를 갖기 위한 방법으로 형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 7) 한편, 피고는 7세경 ◇◇대학교병원 비뇨기과에서 우측 고환 잠복으로 고환절제술을 받음으로써 우측 고환이 소실되었고, 2009. 7. 25. ☆☆비뇨기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요도하열(소변이 나오는 구멍이 귀두 끝 부분이 아니라 귀두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 증상)로 치료를 받은 이래로 2011. 12. 14. ▽▽대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까지 여러 차례의 치료를 반복하여 왔다.
- 8) 원고는 피고의 불임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 피고의 성(性) 기능 장애와 위와 같은 병력 등에다가, 피고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사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처음부터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원고와 결혼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점을 들어 원망과 실망의 감정을 나타내었고, 피고도 그러한 원고에게 서운함과 분노를 느껴서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으며, 2011. 12. 11.경에는 원·피고가 이 문제로 또다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 피고가 원고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누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
- 9) 피고는 2012. 6. 18.경 원고와 다툰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이유】

- 】1. 인정사실
 - 가. 혼인신고 및 자녀
- 원고와 피고는 2011. 1.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
 - 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 1)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와 재활의학과 의사인 피고는 2010. 9.경 중매로 만나 2010. 12. 26. 결혼식을 올리고, 2011. 1.3. 창원시 의창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피고는 결혼 후 원고의 모친인 소외 1이 마련해 준 전세보증금으로 창원시 성산구 (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전세를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
- 2) 피고는 신혼 생활 중이었음에도 원고와의 성관계를 극히 꺼려 왔고, 한 달에 2~3회 정도 이루어지는 성생활도 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성기 대 성기의 결합이 아니라 성행위에 유사하거나 갈음하는 행위(예를 들어 원고의 성기를 피고의 입으로 핥거나 손가락으로 자극하는 식의 행위 등)로 대신하였는데, 2011. 4.경부터는 덥다는 이유 등으로 아예 거실에서 따로 자거나, 매트리스를 구입해 와서 원고와 떨어져 자는 적이 많아서 이 때문에 부부 사이의 불화가 시작되었다.
- 3) 원고는 혼인 직후부터 아이를 가지기를 원하였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자, 피고가 2011. 9. 24. 부산 ○○병원에서 불임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피고가 무정자증에다 성염색체에 선천적 이상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 4) 이에 피고는 검사 결과가 정확한지를 재확인하고 불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 10. 8. 서울△△병원에서 염색체검사를, 2011. 10. 15. □□□□병원에서 염색체검사를, 2011. 12. 14. □□□□병원에서 고환조직검사를 받았다.
- 5) 위 각 재검사 결과, 피고는 정상적인 남성이 가지는 46XY의 염색체가 아닌 45X 세포와 46XY의 염색체가 섞여있는 '모자이시즘(Mosaicism)'이라는 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 성선기능이 저하되어 불임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 6) 원고는 위 재검사 결과를 한참 후에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아이를 갖기 위한 방법으로 형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 7) 한편, 피고는 7세경 ◇◇대학교병원 비뇨기과에서 우측 고환 잠복으로 고환절제술을 받음으로써 우측 고환이 소실되었고, 2009. 7. 25. ☆☆비뇨기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요도하열(소변이 나오는 구멍이 귀두 끝 부분이 아니라 귀두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 증상)로 치료를 받은 이래로 2011. 12. 14. ▽▽대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까지 여러 차례의 치료를 반복하여 왔다.
- 8) 원고는 피고의 불임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 피고의 성(性) 기능 장애와 위와 같은 병력 등에다가, 피고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사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처음부터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원고와 결혼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점을 들어 원망과 실망의 감정을 나타내었고, 피고도 그러한 원고에게 서운함과 분노를 느껴서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으며, 2011. 12. 11.경에는 원·피고가 이 문제로 또다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 피고가 원고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누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
- 9) 피고는 2012. 6. 18.경 원고와 다툰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